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8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강대식 · 박준태 · 백종현
고동진 · 김상훈 · 최수진
유용원 · 한기호 · 구자근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8제2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15조의9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5조의2제7호”를 “제15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u>결격사유</u>) (생 략)	제15조의2(<u>결격사유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 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 방법 등 개인정보 제 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15조의8(시정명령)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 7. (생략)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
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
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
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2제1항을-----

3.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의2제1항-----
-----.
---제15조의2제1항제7호-----

-----.

③ ~ ⑤ (현행과 같음)